

#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49
----------	-----

제안연월일 : 2026. 3. .  
제안자 : 평창군수

## 1. 제안이유

-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으로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양육 가정의 부담 경감 및 방과 후 아동의 안전한 보호 도모하고자,
-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평창군의회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 추진 필요성

-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존운영자(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 재위탁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다.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

-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사무내용
  - 이용 아동에 대한 상시·일시 돌봄서비스 제공
  - 돌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 관리
  - 그 밖의 돌봄서비스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인력운영 : 센터장 1, 돌봄교사(시간제) 2명, 운전원 1명

라. 위탁시설 개요

- 시설명 :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센터장 배영숙)
- 위치 : 평창군 봉평면 기풍로 121-19(공립봉평어린이집 2층)
- 위탁기간 : 2021.7.20.~2026.7.19.(5년)
- 시설규모 : 연면적 183.22㎡(정원 30명)
  - 활동실, 사무실, 화장실, 주방 등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기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2)

- 전용면적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 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 공간, 화장실 및 조리 공간을 각각 갖출 것

마. 민간위탁기간

- 2026. 7. 20. ~ 2031. 7. 19.(5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선정방법
  - 위탁계약기간 갱신에 대한 평창군보육정책위원회 심사 실시
  - 심사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기존 운영체 위탁 선정
  - 심사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변경위탁(공개경쟁)으로 추진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선정기준
  - 수탁자의 사업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사업수행 능력
  - 신청법인(단체)의 공신력, 전문성 및 의지, 재정운영 책임성 등
  -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

사. 수탁기관 예산지원 현황(2026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합계	국비	도비	군비	비고
합계	<b>200,856</b>	44,644	22,725	133,487	
인건비	112,976	38,064	19,435	55,477	
운영비	87,880	6,580	3,290	78,010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서비스의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의 위탁운영이 적합함에 따라,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수탁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의 재위탁을 통해 센터 운영의 안정성 및 지속성 제고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및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설립형태 : 강원특별자치도 출연기관(보건복지부 소관 공익법인)
- 설립일 : 2020.10.6.
- 주요사업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센터 등 수탁 운영

#### 자.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강원특별자치도 설립(2020.10.6.) 비영리법인의 위탁운영을 통한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 전국 최초,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 평가결과 2년 연속 S등급(2024년, 2025년)

#### 차.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추진현황(경과)
  -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021.3.8.
  - 평창군의회 임시회 의안 의결 : 2021.5.18.
  - 민간위탁 심사위원회(평창군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 2021.6.28.
  - 다함께돌봄센터 봉평점 사무 위·수탁 계약 : 2021.7.20.(5년)
-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심사위원회(평창군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 2026. 4.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6. 4. ~ 5.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 관계법령 발취

###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